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긴급 기자회견

□ 때: 2011년 1월 20일(목) 오전 11시

□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학생인권 · 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입시폐지국본, 전교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홍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YMCA전국연맹)

사회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차 례 □

- 사회 : 최주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 [여는말]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사회자

2.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3. [규탄발언 1]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도경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서리)

4. [규탄발언 2]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등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정책 무력화를 중심으로

-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5. [규탄발언 3] 시행령 개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학생의 입장에서

- 어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6. 향후 투쟁계획 발표

-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7.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와 학생인권조례무력화가 선진화?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관련 주요 경과 및 문제점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추진 주요 경과

- 2010.07.07 : 교과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두발, 체벌 등 학생생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힘. '획일적 조례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혀 학생인권조례 대응용 조치임을 내비침.
- 2010.07.12 : <메디컬투데이>, 교과부가 이례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법 충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
- 2010.07.19 :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정책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시교육청 지침이 법령에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받겠다'고 업포.
- 2010.08.18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여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 발표. 강인수 교수(수원대 부총장)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시안을 발표. '교과부가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으로 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보다보며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반인권적 개정안이 연구보고서로 발표된 것임.
- 2010.09.09 : <문화일보>, 교과부 관계자 말을 인용, 10월 중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1월말 교과부의 '학생권리신장방안'이 확정될 예정이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0.09.10 : 교과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본격화
- 2010.09.15 : 교과부,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장과 관계자 전교조 방문
-학생인권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입법 발의 예정, 내년 2월까지 개정

완료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공지함

- 2010.09.16 : 교과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방문
- 2010.09.19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되는 사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안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라고 촉구.
- 2010.09.27 :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0.10.07 : 교과부, <학생권리신장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 개최함.
 - 학생권리신장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 8월 18일 교육법연구팀(강인수 교수)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교과부는 시행령만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최종 마련함.
 - 권역별 공청회 계획을 없애고 협의회로 대체한다고 발표함. 전교조 관계자 항의하며 퇴장.
- 2010.10.12 : 시민사회단체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0.10.29 : 교과부,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개최
- 2010.12.29 : 교과부, 바른인성함양을 위한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동국대 조벽 교수팀은 현행체벌대안으로 얼차려 등의 체벌 허용과 출석정지 도입을 언급함.
- 2011.01.17 :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 삭제 추진 경과

- 2008.11.12 : 교과부, '학교자율화조치'의 후속 조치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이 개정안에 '학교규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을 폐지하는 조항이 삽입됨.
- 2008.11.13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 2009.01.12 :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결정

- 2010.07.27 : 법안심사소위 상정
- 2010.09.07 : 법안심사소위 상정

■ 교과부의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주요 문제점

○ 학교장에게 통제되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권력 부여

: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평교사 및 일반 학부모들의 권한이 교장의 권력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임. 위계적인 권력 구조 속에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부여는 사실상 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해주는 것임. 특히 교육감의 학칙에 대한 인가권을 폐지(현재 국회 교과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중)가 함께 진행된다면 견제·통제되지 않는 교장의 자의적 권력행사 속에 학교운영이 진행될 것이고, 이 결과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권리 제한의 이유로서 교육 활동 보호, 학내 질서 유지 등을 두었으나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함.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두어야 하나 이 같이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남용의 위험이 큼.

: 무엇보다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은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같이 시행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 가능성이 높음.

○ 간접이든 직접이든 체벌은 폭력일 뿐임

: 벽보고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 간접체벌로 예시된 것은 사실상 학생에게 모욕을 주고,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끼치는 기합, 얼차려식의 폭력일 뿐임.

: 일례로 2007년 부산의 배정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음. 2010년 김포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을 받다가 사망하기도 했었음.

: 중요한 것은 체벌은 교육학계나 심리학계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임. 오히려 학생들에게 폭력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을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며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은 폭력이라 할 수 있음.

: 상벌점제를 도입해서 안착화시키는 것도 교과부의 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체벌과 별점을 주는 이중의 불합리한 처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임. 상벌점제 자체도 비교육적 반인권적 요소가 지적받고 있음.

* (참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논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까지 100개국 이상이 학교 및 아동에 대한 형사체제에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할 것으로 생각한다(5항). 본 위원회는 체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분명히 확인하였다(7항). 본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제화하거나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8항).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된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손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차는 것, 혼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11항). 본 위원회는 아동의 양육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잦은 물리적인 행동과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일정한 정도의 고통, 불편함 혹은 굴욕을 유발하는 고의적이고 징벌적인 힘의 사용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과 징벌적인 폭력과의 차이를 알고 있다. 아동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국가에서 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간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비징벌적이며 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14항). 아동 혹은 기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촉발된 물리력의 사용과 처벌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간의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 필요한 최단기간동안의,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사용이라는 원칙은 항상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안전하고, 상황에 대해 비례적이며, 통제의 형태로서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과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15항). 더욱이 협약 제28조 2항에서는 학교규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19항). 유엔사회권위원회도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1999년의 일반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본위원회의 견해로는 체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양 규약의 각 전문에 기술된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22항).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련의 판결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죄판결을 해왔으며, 첫 번째는 형사 체제에서 두 번째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에서, 가장 최근엔 가정에서의 체벌을 인권침해로 결정했다(23항). 아동의 발달상의 필요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아동은 성인들의 말뿐 아니라 성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굴욕을 준다면 성인들은 인권의 경시를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갈등의 해결이나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는 강력하고 위협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46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 학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

: 현행 시행령에서는 교내봉사가 최저 수위의 징계. 그런데 개정을 통해서 간접체벌 등

학칙이 정하는 훈육, 지도 방식까지 징계가 됨으로써 기록에 남게 되고 향후 진학지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수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특별교육 이수 다음 단계로 출석 정지 제도가 부활. 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도 '10일 이내 출석정지'제도가 있음. 결국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석 정지되는 학생은 동료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나 학교에 밀보인 학생이 대상으로 포괄될 가능성이 높음. 일종의 '괘씸죄'를 물을 수 있는 독소조항.

: 출석정지는 특별교육이수 이상, 퇴학 바로 전의 중징계임. 때문에 일상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에 있어서도 특별교육이수와 큰 차이가 없어서 도입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출석 정지 기간 동안 Wee센터 등과 연계한다고는 하나, 학생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낙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무엇보다 출석정지가 도입되었을 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을 찾고 그것을 치유·해결하기 보다는 쉽게 학생을 배제할 수 있는 출석정지징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회복과 복귀 등 교육적 지도를 목표로 한 징계가 아닌 배제와 낙인만의 목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임.

: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금의 징계제도가 교육적·민주적인지, 또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인지 점검하고 이를 개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참고: 특별교육이수와 출석 정지 제도의 차이 - 출석정지 징계 기간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되어 수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 학생인권조례의 무력화

: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안착화와 제정움직임이 일어나고,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의 후퇴된 학생인권정책의 발표는 그 저의를 의심케 함.

: 무엇보다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교육감의 인가권이 폐지되고 나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칙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을 조정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이미 통과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상위법 위반에 휘말려 학교현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 질 것임. (참고로 이미 교과부는 발표를 통해 시행령 개정방향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조치의 수정을 요구했음.)

○ 악법을 지키라고? 학칙 준수 서약식에 대한 문제점

: 그동안 학칙 위반 사례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칙자체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제한하고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교과부는 학칙 준수 서약식을 운운하는 등 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닦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즉 악법에 대해 무조건 적인 준법 촉구만을 요구하는 것임.

: 문제는 간단함. 학칙이 민주적 정당성, 인권적 정당성을 얻는다면 굳이 서약식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지키는 자율 규범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임.

[자료 2]

‘학교 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지키자!’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

■ **교과부 앞 1인 시위 돌입**

-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행령 개악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20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돌입할 예정임.
-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저명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임.

■ **시행령 개악에 대한 학생성토대회 개최**

- 시행령 개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학생임. 학교현장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자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시행령 개악에 대한 학생성토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일시: 1월 24, 25일 (양일 중 하루) 장소: 미정 (추후 일시 및 장소 공지할 예정임)

■ **시행령 개악 문제점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에 대한 긴급토론회**

- 시행령 개악의 문제점과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짚어보고자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 토론회는 대책모임 뿐 아니라 국회 교과위 의원실, 교과부의 개악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정당들과 함께 준비할 것임.
- 일시: 1월 26일 2시(예정) 장소: 미정(추후 확정된 일시 및 장소 공지할 예정임)

■ **법률대응 검토**

- 시행령 개악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혹은 위헌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임. 이에 따라 향후 늦어도 입법예고 기간 안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등 동원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

* 이후 과정 속에서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의 철회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임.

[성 명 서]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 무력화, 폭력 합법화 그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지난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도구 등으로 때리는 것 외의 체벌을 허용하는 등, 그 계획의 핵심 내용은 학교문화를 후진화하는 것이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변화에 휘방을 놓고, 안 그래도 낮은 수준인 한국 학교들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를 더욱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계획인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의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내 질서 유지, 교육활동 보호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악안 부분이다. 이처럼 학교장에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유신 헌법이나 독재를 연상케 한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운영되는 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존중되고 있는지 감독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이다.

교과부는 그 대신에 학칙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 역시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하게 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학칙 준수 서약 등 ‘무조건 준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대부분의 한국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와 문화는 안 그래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이었는데, 이제 교과부는 노골적으로 학교를 학교장의 독재기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가?

또한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서 도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발 등으로 때리는 것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체벌은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로서 체벌은 그것이 때리는 것이든, 굴리고 ‘얼차려’를 주는 것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 역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동작을 강요하거나 굴욕적 행위를 하는 것 모두를 체벌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모든 체벌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과부의 체벌 허용 방침은 폭력 없는 교육을 만들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이며, 폭력을 합법화해주는 것일 뿐이다.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 역시 악용이 우려된다. 학교에서는 징계가 학생들의 변화와 복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문제 학생들’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데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학생이 징계 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무단결석’ 처리하는 출석정지 제도는, 학생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학교의 현실에서는 무작정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 무력화, 폭력 합법화 계획은, 결국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등 변화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임이 명백해 보인다.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 신장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더 잘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지 골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반대하며, 시행령 개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입시폐지국본, 전교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홍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YMCA전국연맹)

사회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